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8.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문화관광과장)
- 제출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3.(수) ~ 9. 12.(금)

2. 제안이유

- 달서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 변경(안 제7조, 안 제8조)
 - (현행) 상임이사 → (개정) 대표이사
-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15조)
 - (현행) 4월말까지 → (개정) 2월말까지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 중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자·출연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후속 조치로 재단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문화재단의 상임이사(常任理事) 직책을 대표이사라는 명칭으로 쓰는 사례는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도적 차이가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1. 법적 배경

문화재단은 대부분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됩니다.

재단법인의 의무 기관: 이사회, 이사장.

통상 “상임이사”는 재단 정관에서 두는 직위로, 실질적 상근 대표집행자 역할을 합니다.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등) 용어이나, 공공재단에서도 대외적 대표성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실제 사용 사례

서울문화재단 :

대표이사(상임이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 → 서울시 출연기관임.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등 대부분의 광역 문화재단은 상임이사라는 표현 대신 대표이사를 공식 직함으로 씁니다.

정관에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대표이사라 한다”라고 규정.

반면 일부 군·구 단위 소규모 재단은 “상임이사”라는 직함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차이와 고려점

상임이사: 재단 내부 직책적 성격이 강함.

대표이사: 대외적으로 기관 대표성을 드러내는 명칭, 행정·언론·대중 친화적.

따라서 최근 설립되는 문화재단은 대부분 대표이사 명칭을 채택하여, 이사장(비상근, 의결기구 의장)과 구분합니다.

정리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 → 대표이사로 사용하는 사례는 많으며, 특히 광역·기초단체 산하 문화재단들이 정관을 통해 대표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 마포문화재단 - 조례상 명칭 변경 논의
서울 마포구의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는, 다음과 같이 변경 논의가 언급되었습니다:

기존: “상임이사”

개정안: “상임이사” → “대표이사” 변경 필요성 언급

이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상근이사를 법인의 대표로 명확히 하고 책
임경영 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사항입니다.

마포구의회

기타 동향: 대표이사 구조 확산

최근에는 “상임이사” 대신 “대표이사”를 공식 직책으로 쓰는 문화재단이 확
산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2025년 2월 신임 대표이사(유정주)가 취임해, 재단 운영 주체
로서 대표이사라는 명칭과 역할 체계를 활용 중입니다.

지지씨

과천문화재단 역시 최근 대표이사직 신설 및 임명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he Preview

정리 테이블

자치단체 / 재단명 변경 시점 / 상황 비교

마포문화재단 (서울 마포구) 최근 조례 개정안에서 명칭 변경 논의됨
상근이사 → 대표이사 논의 포함

마포구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2025년 2월, 유정주 대표이사 취임 이미 대표이
사 명칭으로 운영 중

지지씨

과천문화재단 (경기도) 최근 대표이사직 구성 및 임명 대표이사 체제 도
입

The Preview

요약

마포문화재단은 조례 개정안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필요
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등은 이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편이며,
이는 최근 문화재단 운영 트렌드를 반영합니다.